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701호
- 나. 제 안 자 : 서상열 의원(찬성자 33명)
- 다. 제 안 일 : 2024년 4월 3일
- 라. 회 부 일 : 2024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규정된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 관리를 위한 남산생태여가계정 신설(안 제5조)
-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재원 조성 및 용도 규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남산생태여가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함(안 제8조제1항)
-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 필요시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9조제3항)
-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20명 이내로 확대(안 제10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기금’을 사업 성격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기존의 ‘도시재생기금’ 사업은 ‘도시재생일반계정’으로 관리하고,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및 운영 수익금 적립 성격의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하여 ‘지속가능 남산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도시재생기금 계정 신설 배경”

- '23.7월 서울시는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 ▲여가공간 조성, ▲남산의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남산을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 도시 숲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지속가능한 남산’의 관리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남산 곤돌라’를 설치·운영하고, 곤돌라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남산 생태환경 회복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 ‘곤돌라 운영수익’과 ‘남산 생태환경 사업’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3대 핵심 추진방향 >



<자료: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발표 자료('23.07.)>

“주요 조문별 검토”

(1) 기금 제정의 구분(안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59조¹⁾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²⁾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관리 기금³⁾, ▲용자성 기금⁴⁾, ▲적립성 기금⁵⁾으로 구분되며 특별회계와 유사하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기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업관리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도시재생기금’을 ▲서울시 전역 도시재생을 위한 일반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성격의 ‘도시재생일반계정’과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생태환경 회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및 운영수익금 적립 성격의 ‘남산생태여가계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지방자치단체는 기금 신설 시(포괄기금 내 계정 신설 포함)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바⁶⁾, 기존의 포괄적 범위의 ‘도시재생기금’ 계정을 분리하여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을 ‘지속가능한 남산’에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달성 필요에 의해 ‘남산생태여가계정’을 별도로 운용하려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제5조(계정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도시재생일반계정 2. 남산생태여가계정

3)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

4)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용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

5)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

6) 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서울연구원, 2022)

현행	개정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기부금품 6.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2) 도시재생일반계정(안 제6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는 안 제5조제1호의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기금’으로 운용되던 사업을 ‘도시재생일반계정’으로 운영하고자 함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금’ 재원을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재원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의 ‘도시재생기금’을 ‘도시재생일반계정’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의 용도) <신설>	제6조(도시재생일반계정) ①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기부금품 6.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현행	개정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7. (생략) 8.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 12. (생략)	② 도시재생일반계정-----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재생일반계정----- --- 9. ~ 12. (현행과 같음)

(3) 남산생태여가계정(안 제7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안 제5조제2호의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다수의 기금이 자체 재원이 없고(붙임 3) 기금 수입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남산생태여가계정’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자금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남산 곤돌라’ 사업 운영계획(안) 〉

□ 수입분야 : 연간 151억 77백만 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백만원)	비고
계		15,177	
이용료	곤돌라 수요추정치 x 객단가 ⁷⁾ 1,897,094명 x 8천원 =	15,177	

□ 지출분야 : 연간 85억 11백만 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백만원)	비고
계		8,511	
인건비	1인 평균 인건비 x 운영인력 55,537천원 x 40명 =	2,222	2022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1.4% 적용

7) 일정 기간의 판매금액을 그 기간의 고객 수로 나눈 값

항목	산 출 근 거	금액(백만원)	비고
수도광열비	매출액의 약 0.16%	25	남산케이블카 감사보고서 2018~2109년 참고
유지관리비	매출액의 약 0.06%	9	
각종공과금	매출액의 약 0.77%	117	
기타판관비	매출액의 약 16.90%	2,564	
수수료	매출액의 약 1.98%	300	
선하지 임차료	국유재산법 참고	173	
감가상각비	건축물 40년, 시설물 20년 정액상각	1,249	
법인세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율 적용	1,852	

<자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운영 1년차 기준)>

- 서울시가 제출한 ‘남산생태여가계정’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운영⁸⁾ 1년차 예상 수익은 151억 77백만 원으로, 감가상각비⁹⁾를 제외한 서울시설공단 위탁 대행¹⁰⁾ 운영비 72억 62백만 원을 지출로 가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순수익 약 79억 15백만 원을 매년 ‘남산생태여가계정’ 기금의 재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남산생태여가계정’ 운용계획(안) >

구 분	대 상	절 차
전입	- 곤돌라 운영수익금 전액	- 도시재생기금 (남산계정)으로 세입 처리
전출	- 곤돌라 운영비용 - 남산 생태회복 사업비 등	- 매년,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하여 교부

<자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8) ‘남산 곤돌라’ 공사는 ‘2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후 3개월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실제 운영은 ‘26년 3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함

9) 감가상각비 12억 48백만 원은 실제 지출금액이 아니므로 지출액에서 제외

10) 제323회 임시회 의안번호 1790호, 남산 곤돌라 관리·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시장 제출)

- ‘남산생태여가계정’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남산 생태환경 보전사업, 여가공간 조성사업,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의 사용 용도를 남산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기금의 사용 용도를 남산 생태환경 회복과 관련된 정책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 전역의 생태경관보존지역 등 환경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공공성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남산생태여가계정) ①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남산공원 기본조례”라 한다)」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곤돌라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산공원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 사업의 시행 2. 「남산공원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 3.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4.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4)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8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안 제5조에 따라 ‘도시재생기금’이 ‘도시재생일반계정’과 ‘남산생태여가계정’으로 분리되면서 포괄기금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므로, 포괄기금 내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정별로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¹¹⁾(행정안전부, ’23.7월)에 따르면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 경상북도 봉화군의 포괄기금 내 계정별 기금운용관 운영 가능 여부 문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하나의 포괄기금이라도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고 회신¹²⁾한 바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계정별로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11) □ 회계관직의 지정

구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자료: 202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2) 봉화군 포괄기금 설치를 통한 기금운용 개선(2023)

현행	개정안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2. <u>분임기금운용관 : 균형발전정책과장</u> 3. 기금출납원 : <u>균형발전정책과</u> 기금담당사무관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분임기금운용관</u> 가. <u>도시재생일반계정 - 균형발전정책과장</u> 나. <u>남산생태여가계정 - 도시정비과장</u> 3. ----- <u>각 계정별</u> -----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¹³⁾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 제9조제3항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생각함
- 다만, 향후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최 시기, 위원 구성, 구성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신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는 ‘도시재생기금’ 내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에 대한 계정이 추가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견제·관리 감독을 통해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며 대가가 없는 무상급부의 원칙에 따라 운용되는 일반회계와 달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융자사업 등 수행이 가능한 기금은 집행부의 운용 재량이 크며(붙임 4), 기금의 목적사업 여부 등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되므로 기금 사용의 견제·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있어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하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¹⁴⁾ 등 현행법을 고려했을 때, 기금 운용 시 사전적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인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원 정수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¹⁵⁾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심의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시는 ‘남산생태여가계정’ 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생태·환경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확보하여 심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1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20명</u> -----.

1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23.7월 발표한 '지속가능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하여,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회복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재생기금'에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는 기존의 포괄적 범위의 '도시재생기금'을 사업 성격에 따라 '도시재생일반계정'과 '남산생태여가계정'으로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을 '지속가능한 남산'에 사용하기 위해 '남산생태여가계정'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는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기금'으로 운용되던 사업을 '도시재생일반계정'으로 운영하고자 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는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계정은 '남산 곤돌라' 운영 수익금과 자금 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므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용도가 남산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되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공공성 확장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포괄기금 내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 계정 별로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측면에서 타당하다 하겠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는 ‘도시재생기금’ 내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에 대한 계정이 추가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 시 사전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위원 정수의 확대는 타당하다 하겠음

붙임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기부금품 6.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계정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도시재생일반계정 2. 남산생태여가계정
제6조(기금의 용도) <신설>	제6조(도시재생일반계정) ①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2.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7. (생략)

8. 도시재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 12. (생략)

<신설>

4. 차입금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기부금품

6.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시재생일반계정-----
-----.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재생일반계정-----

9. ~ 12. (현행과 같음)

제7조(남산생태여가계정) ①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남산공원 기본조례”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곤돌라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남산생태여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남산공원 기본조례」 제8조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분임기금운용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에 따른 생태환경 보전 사업의 시행

2. 「남산공원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여가공간 조성 사업의 시행

3. 남산공원이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4. 남산생태여가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가. 도시재생일반계정 - 균형발전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u>균형발전정책과</u> 기금담당사무관 ② · ③ (생 략) <u>제8조</u>(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 치) ① · ② (생 략) <u><신 설></u> <u>제9조</u>(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1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u>제10조 ~ 제12조</u> (생 략)	<u>나. 남산생태여가계정 - 도시</u> <u>정비과장</u> 3. ----- <u>각 계정별</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9조</u>(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 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u> <u>회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u> <u>· 운영할 수 있다.</u> <u>제10조</u>(위원회의 구성) ① ----- ----- ----- <u>20명</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11조 ~ 제13조</u> (현행 제10조부 터 제12조까지와 같음)
---	---

붙임2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2024.4.11.기준>

위원회명		위원 정수	집행기관 소속 위원 수	위원장	부위원장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10	2	기획조정실장	공공자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	3	기획조정실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0	2	기금운용관	×
	투자계정	10	2	기금운용관	×
	사회적경제계정	10	2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		13	2	기금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위원 중 호선
기후대응기금		15	1	소관실·국·본부장	×
도로굴착복구기금		12	2	재난안전관리실장	소관 업무 담당국장
성평등기금		12	1	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 중 호선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협의회, 시설별)		-	3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자원회수시설과장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0	0	위원 중 호선	×
	장애인복지계정	10	0	위원 중 호선	×
	자활계정	10	0	위원 중 호선	×
	주거지원계정	10	0	위원 중 호선	×
체육진흥기금		9	1	관광체육국장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5	3	행정2부시장	복지정책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재난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대행)		20	0	위원 중 호선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10	0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국제협력계정	10	0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도시재생기금		11	1	균형발전본부장	위원 중 호선
관광진흥기금		9	1	관광체육국장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0	2	행정국장	인력개발과장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	3	행정2부시장	하수도사업 관리자
박물관미술관 소장품구입 기금		10	0	문화본부장	×
고향사랑기금		9	1	소관부서 국장급공무원	×

주: 조례 상 규정된 사항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구성 및 운영 여부 등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붙임3 서울시 기금별 자원 현황

기금명	자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예탁 등 운용수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식품진흥기금	자체자원(과징금 등)
기후변화기금	자체자원(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사회투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자체자원(원인자부담금)
성평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폐기물반입 수수료 등)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잠실야구장 광고수입)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일반회계 전입금(의무적립)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도시재생기금	자체자원(과밀부담금 귀속분)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도사업회전기금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자료: 서울시 기금 성과분석과 정비(서울연구원,2022)>

붙임4 예산과 기금 비교

구분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 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 사업 운영 - 특정 자금 운용 -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운용 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
확정 절차	- 부처의 예산 요구 -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좌동	- 기금관리주체가 운영 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조정 - 국회 심의·의결 확정
집행 절차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좌동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 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동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시 국회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결산심의 승인	좌동	좌동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 해설' 재인용>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11명”을 “20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나. 전제

-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증원되는 9명은 모두 비공무원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20,700천원(연평균 4,1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4,140	4,140	4,140	4,140	4,140	20,700
	소계(a)	4,140	4,140	4,140	4,140	4,140	20,7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4,140	4,140	4,140	4,140	4,140	20,7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11명”을 “20명”으로 변경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20,700천원(연평균 4,1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4,140	4,140	4,140	4,140	4,140	20,700
	소계(a)	4,140	4,140	4,140	4,140	4,140	20,7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4,140	4,140	4,140	4,140	4,140	20,700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20,7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18,000천원+2,700천원

- 참석수당 = 18,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9명×2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2,7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9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